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고단 70,291,55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고단70, 291, 55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선현숙, 서강원, 권순기(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70]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00:25 무렵 서울 은평구 D 부근 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몸을 대주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C이는 나한테 안대주나?", "몸 한번 대주면 만나는 거 생각해볼게"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29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2. 14. 01:21 무렵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7세)의 휴대전화로 발신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혹시 E 씨 맞습니까? 사랑합니다. 따먹고 싶습니다."라고 수 회 반복하여 말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가. 피고인은 2014. 10. 5. 무렵부터 같은 해 12. 23. 무렵까지 서울 불상지에서 E의 카 카오스토리 게시 글에 "사랑해, 따먹고 싶다."라는 댓글을 14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4. 12. 14. 02:30 무렵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E씨 맞습니까, 사랑합니다. 따먹고 싶습니다." "야 이 씹할년아 따 먹고 싶다고."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 다. 피고인은 2014. 12. 30. 무렵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키키키 E이랑 빠구리도 떠봤단다 원나잇도 하고 개걸래였노 그리고 졸라 개 카와이하노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5고단55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5. 05:01 무렵 서울 은평구 F, 22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글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인터넷 캡쳐 사진, 페이스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제1항 제1호(각 음란물 유포의 점, 벌금 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 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 다. 피고인은 피해자 C, E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정신병 초기, 충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는등 성폭력범죄의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판사 이광우